

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								
사업위치											
총사업비	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: none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총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국비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사비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보조율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구비)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,333,947천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,333,947천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 %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총	(국비)	(사비)	(보조율)	(구비)		19,333,947천원	19,333,947천원	0 %	
총	(국비)	(사비)	(보조율)	(구비)							
	19,333,947천원	19,333,947천원	0 %								
사업내용	○ 어르신들의 취미, 여가, 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 및 교육, 사회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를 위한 주거 밀착형 데이케어센터 설치										
사업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접수행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자치단체 보조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이전 <input type="checkbox"/> 출연출자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위탁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								
사업시행주체	자치구										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
신규	계속	투자심사	학술용역	기술심사	자랑보조심의	정보화심사	공유재산	안전예산	출자·출연
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경상	투자					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

□ 지역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

지원형태	법령근거	보조금심의회 결과
사업보조	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	
운영비보조		

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복지본부	어르신복지과	김복재 2133-7400	홍순옥 2133-7423	최문선 2133-7424
복지본부	어르신복지과	김복재 2133-7400	박용진 2133-7428	손기영 2133-7429

2 예산 설명

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5년 예산액	2016예산액 (A)	2017예산(B)	증감 (B-A)	(B-A)*100/A
					(x-)
계	(x-) 6,083,400	(x-) 7,209,800	(x-) 19,333,947	(x-) 12,124,147	(x-) 168
자치단체경상보 조금	(x-) 253,400	(x-) 254,800	(x-) 252,000	(x-) △2,800	(x-) △1
시설비	(x-) 230,000	(x-) 150,000	(x-) 8,743,710	(x-) 8,593,710	(x-) 5,729
감리비	(x-)	(x-)	(x-) 1,628,237	(x-) 1,628,237	(x-)
시설부대비	(x-)	(x-) 5,000	(x-) 110,000	(x-) 105,000	(x-) 2,100
자치단체자본보 조	(x-) 5,600,000	(x-) 6,800,000	(x-) 7,800,000	(x-) 1,000,000	(x-) 14
자산및물품취득 비	(x-)	(x-)	(x-) 800,000	(x-) 800,000	(x-)

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과목구분	세부 산출내역
자치단체경상보조금	○ 데이케어센터 임대료 지원 = 252,000천원 6개소*42,000,000원
시설비	○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증축 = 1,000,000천원
	- 공사비 = 940,451천원 940,451,000원
	- 설계공모비 및 실시설계비 = 59,549천원 59,549,000원
	○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증축(별관 신축) = 740,000천원

과목구분	세부 산출내역	
	740,000,000원 ○ 시립노인요양시설 신축 - 공사비 ▷ 동대문 2,100,000,000원 ▷ 광진 2,800,000,000원 - 실시설계비 ▷ 동대문 364,000,000원 ▷ 광진 472,678,000원 ▷ 마포 1,061,032,000원 - 설계공모비 ▷ 동대문 50,000,000원 ▷ 광진 50,000,000원 ▷ 마포 106,000,000원	= 7,003,710천원 = 4,900,000천원 = 2,100,000천원 = 2,800,000천원 = 1,897,710천원 = 364,000천원 = 472,678천원 = 1,061,032천원 = 206,000천원 = 50,000천원 = 50,000천원 = 106,000천원
감리비	○ 시립중량노인전문요양원 증축 143,237,000원 ○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증축(별관 신축) 50,000,000원 ○ 시립노인요양시설 신축 - 동대문 667,000,000원 - 광진 768,000,000원	= 143,237천원 = 50,000천원 = 1,435,000천원 = 667,000천원 = 768,000천원
시설부대비	○ 시립중량노인전문요양원 증축 10,000,000원 ○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증축(별관 신축) 10,000,000원 ○ 시립노인요양시설 신축 - 시설부대비 3개소*10,000,000원	= 10,000천원 = 10,000천원 = 90,000천원 = 30,000천원

과목구분	세부 산출내역
	- 설계경제성 검토비 3개소*20,000,000원 = 60,000천원
자치단체자본보조	○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3개소*1,000,000,000원 = 3,000,000천원 ○ 데이케어센터 설치 4,800,000,000원 = 4,800,000천원
자산및물품취득비	○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증축(별관 신축) 건물,토지 매입비 800,000,000원 = 800,000천원

3 사업 설명

□ 사업목적

- 어르신 취미, 여가, 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 및 신노년층의 교육, 일자리, 사회공헌 활동 등 제2인생 설계를 위한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지원
-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 주야간 보호시설 확충을 통한 어르신복지 증진 및 부양가족 부담 경감 지원

□ 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
 -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
 -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및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2조
 - 노인복지법 제45조,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
- 기타 근거(방침, 지침 등)
 - 「9988 어르신 프로젝트」 추진계획(시장방침 제330호, '08.6.30)
 - 서울시 치매요양 종합대책(시장방침 제127호, '14.4.28)

□ 사업내용

-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지원
 - 지원대상 : 3개 자치구 건립비 지원
 - 지원내용 :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보조금은 '16년 신축, 증축, 리모델링 지원 단가에 건립규모를 곱하여 산정하되 지원상한액은 10억으로 제한
 - 지원조건 : 총면적 500㎡ 이상, 부지확보 및 운영비는 각 자치구에서 부담(조건)
- 데이케어센터 설치 지원

- 지원대상 : 자치구 및 법인정관 목적사업에 노인복지 관련 사업 규정이 있는 비영리법인
- 추진방법 : 자치구별 확충실적, 이용자 접근성,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설치목표 대비 실적이 부족한 자치구에 우선 설치(치매전용, 등급외자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설치 포함)
- 설치기준
 - ▷ 이용정원 : 17인 이상 규모 어르신 주야간 보호시설(데이케어센터)
 - ▷ 시설면적 : 시설 총면적 156~190㎡ 이상 [5인이상 90㎡ + 6.6㎡/1명]
 - ▷ 시설기준 : 노인복지법제39조(재가노인복지시설의설치), 동법시행규칙제29조(재가노인복지시설의시설기준) 및 별표9에 적합하도록 설치
- 임대형 데이케어센터 임대보증금 지원
 - 지원대상 :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을 받은 자치구, 비영리법인 운영 임대형 데이케어센터
 - 사업기간 : 2017.1월 ~ 12월
 - 추진방법 :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임차 계약하는 경우 자치구를 통하여 증액분 추가 지원 후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 확보
 - 지원기준
 - ▷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와 관련 현 임대보증금의 9/100의 금액 한도 내 지원
- 시립노인요양시설 신축
 - 건립대상 : 3개소(동대문, 광진, 마포)
 - 건립규모
 - ▷ 동대문 :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,810㎡(정원:80인)
 - ▷ 광진 :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,691㎡(정원:100인)
 - ▷ 마포 :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10,121㎡(정원:120인)
- 요양시설 및 복지관 증축
 - 건립대상 : 2개소(시립중랑요양시설 및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)
 - 건립규모
 - ▷ 시립중랑요양시설 :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2,243㎡(정원:70인)
 - ▷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: 지상3층 연면적 224.4㎡

□ 사업추진절차

-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지원

- 건립지원계획 수립 → 자치구 신청접수 → 검토 및 사업선정 → 사업별
자치구 지원

○ 데이케어센터 설치 지원

- 사업비 신청(구→시) ⇒ 적정성 확인(구)⇒현장실사(시) ⇒
사업비교부(시→구)⇒ 채권 확보(구)

□ 2017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19,333,947	
수요조사 및 설치계획 수립	2017.01~2017.03		수요 분석
사업비 신청 및 선정	2017.01~2017.12		지원검토 후 사업대상 선정
사업비 교부	2017.01~2017.12	19,333,947	지원타당성 검토 및 사업비 교부
사업비 정산	2017.01~2017.12		사업 완료 후 정산

4 사업 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4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규모노인복지센터 : 2개소 [양천(1), 동작(1)] ○ 데이케어센터: 10개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동(1), 중랑(1), 강북(1), 도봉(1), 서대문(1), 양천(1), 구로(2), 서초(1), 강남(1), 강동(1) - 유상임차시설 재임차 보증금 인상분 지원: 1개소(강동구)
2015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규모노인복지센터 : 1개소(은평) ○ 데이케어센터 : 7개구 10개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규설치(송파 2, 동작, 강북, 영등포 2, 중랑), 재임차임대료 지원(은평, 성북, 중랑)
2016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규모노인복지센터 : 2개소[노원, 영등포구] ○ 데이케어센터 : 7개구 10개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규설치 : 7개구 8개소(광진, 영등포, 관악, 강동, 노원, 은평, 송파) - 임대보증금 인상분 지원 : 2개구 2개소(관악, 강동)

□ 향후 기대효과

- 접근성 높은 지역밀착형 소규모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
- 급증하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수요에 대비한 시설 확충으로 고령화사회 대처 및 부양가족의 부담 경감

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당초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3	(x-) 3,000,000	(x-) 0	(x-) 0	(x-) 3,000,000	(x-) 2,961,000	(x-) 0	(x-) 39,000
2014	(x-) 2,872,000	(x-) 0	(x-) 0	(x-) 2,872,000	(x-) 2,536,000	(x-) 0	(x-) 336,000
2015	(x-) 9,083,400	(x-) 0	(x-) 0	(x-) 9,083,400	(x-) 7,043,886	(x-) 1,415,245	(x-) 624,269